

대구고등법원 2017. 1. 25 선고 2016나24520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재판경과

대구고등법원 2018. 3. 28 자 2017재나93 결정

대구고등법원 2017. 11. 9 자 2017재나31 결정

대구고등법원 2017. 1. 25 선고 2016나24520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 7. 22 선고 2015가합650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1. B

2. C

변론 종결2016. 12. 7.

판결 선고2017. 1. 25.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 7. 22. 선고 2015가합6501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5. 10. 13.부터 2015. 10. 12.까지는 월 930,000원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549,000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에서 제출된 을 제6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들 모두 살펴보다도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유자인 원고와의 분쟁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제1심 법원의 E에 대한 임료감정축택결과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이 건축허가를

받아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근린생활시설 상가건물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임료를 감정한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가치보다 부당하게 높은 토지 임료를 산출한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금액을 판단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다.

나. 판단

제1심 법원의 E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들의 주장과 달리 제1심 법원의 E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는 임료 감정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 구애되지 않고 평가한 것이므로(감정평가서 제6면), 제1심 법원의 E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가 이 사건 건물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근린생활시설 상가건물임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제1심 법원의 E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가 부당하거나 그 감정방법 등에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그 전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제1심 판결의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성수제

판사장래아

판사진원두

별지